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352
----------	------

2025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윤영희 의원 외 28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02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6일

라.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전동킵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 75%가 충돌 위험 및 불편을 응답한 만큼,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킵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킵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11. ~ 2.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¹⁾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 무단방치, 보도통행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포함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1)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보행자전거과-2115호, 2025.2.14.)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는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의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²⁾을 매년 수립하여 자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24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보행자전거과-4495호(2024.3.26.))

<주요 추진계획>

- | | |
|---------------------------|--------------------------------|
| (1) 공유 PM 주·정차 위반 견인제도 강화 | (2) 공유 PM·자전거 법률 제·개정 대응 |
| (3) 공유 PM 주차구역 조성 및 관리 | (4) 공유 PM 대여업체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
| (5) PM·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 조성 | (6) 공유 PM·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개선 |

- 서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견인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안전대책 등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이용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³⁾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45	406	500
차대사람	소 계	174	198	271
	횡단중	24	32	30
	차도통행중	9	14	21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7	5	5
	보도통행중	58	72	117
	기 타	76	75	98
차대차	소 계	249	185	213
	정면충돌	24	11	11
	측면충돌	114	74	93
	추 돌	4	13	13
	기 타	107	87	96
차량단독	소 계	22	23	16
	공작물충돌	1	1	3
	주/정차차량 충돌	-	-	-
	도로이탈	1	-	-
	기 타	14	16	12
	전 도	6	6	1
	전도전복	-	-	-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김원중 의원 27번)

출처 : 경찰청 DB자료, '24년 현황자료는 '25년 5월 이후 산출

- 2024년 9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⁴⁾를 보면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약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고,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비율 또한 약 75.6%에 달했다는 점을 볼 때,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대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 조례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 한편, 서울시는 '24년 11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계획⁵⁾을 발표한 이후, '24년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⁶⁾를 통해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 2개 구간을 ‘킥보드 통행 금지’ 거리로 지정하여 금년 4월 중 시행 예정임

4)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개요 (서울시)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5세~69세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0%
- 조사기간: 2024.9.27.~9.30. / 조사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5)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어(서울시 보도자료, 2024.11.5.)

6)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추진 경과(서울시 자료)

- 2024.12. 서울경찰청/관할경찰서 협의
- 2024.12.20.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요청(7개 도로)
- 2024.12.30. 교통안전시설심의 (2개 도로 승인, 5개 도로 보완)
- 2024.1~2. 자치구-관할경찰서 협의, 통행금지 도로 지정 철회(5개 도로)
- 2025.1~3. 홍보활동 전개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경찰청 또는 자치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이전에 대상구간의 도로여건과 보행량,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설치 개선안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면밀히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5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송도호,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 75%가 충돌 위험 및 불편을 응답한 만큼,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사업추진 등)제1항제4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